주간 규제 정보

Vol. 390

2022. 03. 21 ~ 2022. 03. 27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 ····· 3
2.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3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3. 국립전파연구원, 28㎓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 8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호주, 산업용 수은의 수출입을 제한 ····· 12
6. 일본, 안전보건자료 및 라벨링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234종의 물질 고시 ····· 12
7. 유럽위원회, 환경발자국 데이터를 REACH하에 의무로 보고하도록 제안 ····· 13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멕시코 식품 수입 절차 및 유의사항 ····· 14
9. 2022년 중국 수입식품 관련 新 정책 시행 ····· 1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

-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 시장전략이사회 이사로 선출 -
- 한국 이사 2명은 이번이 처음,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 기대 -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이 선출(임기 : '22.3월~ '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한 데 이어, 이번에 OLED 권위자인 이창희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주요 경력 : (현)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부사장),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18.8월), OLED 디스플레이 작업반(IEC TC110 WG5) 의장 ('05.10월~'08.12월)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이사가 2명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MSB 국가별 이사진(15명) : 한국 2, 미국 2, 독일 1, 일본 2, 중국 3, 영국 1, 캐나다 1, 프랑스 1, 인도 1, 싱가폴 1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백서*를 발간('21.10월) 하였으며,

* '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신설을 확정('22.2월) 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 표준화평가그룹(SEG)은 해당 분야 표준화 전략·로드맵 등을 수립한 이후 국제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표준화 위원회(TC/SC 또는 SysC 등)로 전환되는 경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인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관세청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

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은 학용품(연필, 샤프, 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건 53만점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3. 국립전파연구원, 28㎓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 3년간 연구개발 결실맺어,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28㎓)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5G 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 : 안테나 시험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형 측정시설이 요구되나, 전파 반사경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측정을 위한 전파 균일 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5G 안테나 측정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 (참고) 관련 R&D 사업 주요사항 >

- 사업명 :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
- 예산액 : '19~'21년간 총 27.4억원(방발기금, '19년 7.4억원, '20년 10억원, '21년 10억원)
- 참여자 : 전파연(박정규, 임종혁), GIST(김강욱), 조선대(오순수), 한밭대(정영배) 등

□ 개발 경과를 보면 ▲1차년도('19년)에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차년도('20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 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 **3차년도**('21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 본 연구 수행으로 특허출원 5건(국내 4건, 해외 1건) 및 국제 SCI급 논문 3건 게재 완료

□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ICT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1 오프닝 행사 및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 개요

□ 배 경

○ 5G 시스템에 대한 측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21.12월 완료)의 오프닝 행사를 통해 대외 5G 홍보 및 성과 확산

□ 행사 주요내용

○ 일 시 : 2022. 3. 22.(火), 14:20~17:10

○ 장 소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시험동(오프닝)/빛가람전파홀(워크숍)

※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 해외연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

○ 참석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전파연구원장, 전파기반과장, 전자파학회장, 지정시험기관협회장, 국내 제조사 및 통신사 관계자 등

○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구성	비고
14:20 ~ 15:00		**[오프닝]**	
14:20 ~ 14:25	5'	• **테이프 커팅(고속측정시스템) 및 기념사진 촬영**	**제2차관,** 주요 참석자 등
14:25 ~ 14:45	20'	• 고속측정시스템 소개(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및 시연	임종혁 연구사(RRA)
14:45 ~ 15:00	15'	• 이동 (전자파시험동 → 빛가람전파홀)	
15:00 ~ 17:10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	
15:00 ~ 15:05	5'	• **축사**	**제2차관**
		< 5G 세션 >	오순수 교수(조선대)
15:05 ~ 15:25	20'	•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기술	김강욱 교수(GIST)
15:25 ~ 15:45	20'	• 5G 대역 밀리미터파 근거리 특성 측정연구 및 분석	박정규 연구관(RRA)
15:45 ~ 16:05	20'	• 5G와 이동통신 산업 발전 방향	이동우 프로(삼성전자)
		< Beyond 5G 세션 >	박기식 박사 (인본정책연구원)
16:05 ~ 16:25	20'	• Eliminating 28 ㎓ 5G Dead Spot using 360 Degrees Beamforming Antenna Technology	홍원빈 교수 (POSTECH)
16:25 ~ 16:45	20'	• Combining FR1 RIMP and FR2 LoS measurement in RC	Dr. John Kvarnstrand (BLUETEST, 스웨덴)
16:45 ~ 17:05	20'	• Over-The-Air Testing Beyond 5G: An Evolution	Dr. Benoit Derat (R&S, 독일)
17:05 ~ 17:10	5'	• 폐회	

※ 오프닝 및 워크숍 현장 사진은 행사 후 즉시 배포 예정

붙임2 5G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개발 성과 개요

□ 개 요

○ 5G 안테나의 측정시간 단축*과 6G 등 미래 측정기술 확보를 위해 전파연과 국내대학의 공동연구로 고속 측정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 기존의 시험시설(CATR 방식)에서는 5G 기지국의 총복사전력 측정에 **약 200시간**이 소요되나,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약 12분**이 소요되어 획기적으로 개선

< 관련 R&D 사업 주요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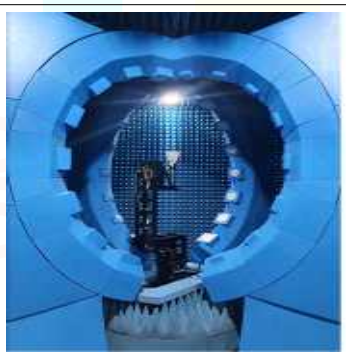
- 사업명 :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
- 예산액 : '19~'21년간 총 27.4억원(방발기금, '19년 7.4억원, '20년 10억원, '21년 10억원)
- 참여자 : 전파연(박정규, 임종혁), GIST(김강욱), 조선대(오순수), 한밭대(정영배) 등

□ 주요 개발경과

○ 3개년에 걸쳐 프로브-수신기 일체형 모듈을 개발하고, 측정 시간, 측정 정확도 등을 개선하며 전파연(나주, 이천)에 측정시스템 구축

※ 원형아치에 다수의 측정 프로브를 배열하여 모든 방향 신호를 한번에 측정 가능

< 1~3차년도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결과 >

구분	1차(2019년)	2차(2020년)	3차(2021년)
주파수 대역	3.5㎓ (3.4㎓ ~ 3.8㎓)	3.5㎓/28㎓ (3㎓ ~ 40㎓)	28㎓ (24㎓ ~ 30㎓)
주요 특징	단일아치 프로브 배열(59개) 시스템 상용 계측장비 사용, 스위치 및 RF케이블 사용	이중아치 프로브 배열(각 16개) 시스템 상용 계측장비 사용, 스위치 및 RF케이블 사용	프로브-수신기 일체형 모듈 배열(84개) 시스템 자체개발 수신기 사용, 디지털 신호처리로 신호 왜곡 최소화
측정항목	3D 방사패턴, 이득	3D 방사패턴, 이득, TRP	3D 방사패턴, 이득, TRP
측정시간	94분	24분	12분
정확도	1dB 이내	0.8dB 이내	0.5dB 이내
시스템 모습 (설치장소)	 (이천센터 전기동)	 (이천센터 밀리미터파동)	 (나주 본원 특수시험동)

□ 특허 및 표준화 현황

○ 특허 출원 5건(국내 4건, 국외 1건*) 및 국제 표준화(아·태무선그룹(AWG) 작업아이템 선정) 추진

* 영국의 저명 SCI 논문지(Electronic Letters)에 연구결과 수록 및 논문 표지로 선정

□ 향후 추진과제

○ **(국제표준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방법을 국내·외 시험기관,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도록 국제 표준화

- 3GPP 국제표준(Release 18, '22~'24년 예상) 채택을 목표로 추진(KCA 협조)

○ **(상용화)** 국내 시험기관, 제조업체, 계측기 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용화 추진

- 측정 데이터의 상호 비교연구 수행 및 현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00년대 초 스위스 취리히 공대는 전자파 인체안전 SAR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취리히 소재 SPEAG社)함으로써, 현재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 차지

○ **(추가 연구)** 테라헤르츠 등 고주파 대역까지 프로브-수신기 모듈기술 응용을 확대하고, 기존 5G 측정방법과 하이브리드화 등 추진

□ 기대효과

○ 해당 기술을 5G 시험기관(현재 24개) 및 5G 기기 제조업계에 보급 추진함으로써 5G 글로벌 시험·계측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

○ 5G 시험 고속화로 5G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하고, 활발한 개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5G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5G 기기 개발 국내기업의 시제품 검증 및 보완 작업 고속화 가능

○ 개발된 기술은 5G 밀리미터파 대역 뿐 아니라 신호감쇠 및 왜곡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6G 등 테라헤르츠 대역 측정의 기초기술 확보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개정·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 22일 개정·배포합니다.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수입식품 특별법」 제5조)

□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입니다.

○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습니다.

* (예시)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 가공식품(김치류.과자류 등)/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 (예시) 농산물 포장 →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 가공시설), 집하장

○ 또한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 신규·갱신 등록 시 필요 서류, 세트 상품 등록 방법, 허위 수입신고 해당 여부 등

○ 아울러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 안내서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로도 함께 제공합니다.

* 영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어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에게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를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E-Book)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개요
2.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개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란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16.8월)

*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 생산·가공 선박 포함)

** (법적근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산물(포장), 건기, 수산물

○ (등록현황) 52,969개소('22.2월 기준)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 **(등록신청)**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food.mfds.go.kr)에서 해당 제조업소 신규·변경·갱신등록 등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

✓ **등록유형 :** 신규, 변경, 갱신
✓ **업소정보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자우편번호 등
✓ **식품정보 및 영업종류(예) :** (식품정보)가공식품, (영업종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여부 :** HACCP, ISO 22000 등

○ **(검토·처리)** 민원서류 검토 후 신청자에게 등록처리 결과 알림

* ①서류 적합성, ②등록신청 업소의 기등록 여부 ③업소명·소재지 등 변경사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 2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Q.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식품 생산 시설임을 증빙 받은 서류(영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출서류가 수출국 정부 언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경우 공증번역 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번역 공문(영문으로 작성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정보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신청시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ISO22000 등)이 적용된 업소는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승인 과정에서 등록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약처는 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Q. 농산물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A. 농산물의 경우 최종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그 형태에 따라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가공시설), 집하장으로 구분 등록해야 합니다.
3	**Q. 각각 다른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A. A사, B사에서 각각 제조한 제품을 C사에서 단순 합포장하여 최종 세트상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제품이 제조되는 A사, B사 및 C사를 해외제조업소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예 : 과자 선물세트) 다만 A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B사에서 납품 받아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함께 최종 포장하여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B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 : 라면(B사)+스프(A사)]
4	**Q.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등록하지 않은 수입 영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허위 수입 신고에 해당되나요?** A.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등록하지 않은 수입 영업자가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도허 위 수입신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	**Q.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A.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해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B)를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호주, 산업용 수은의 수출입을 제한

2022년 3월 7일부터 호주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따라 산업용 수은의 수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 Minamata Convention of Mercury

이에 따라 수출 및 수입업자는 수출입에 앞서 AICIS* 비즈니스 서비스 웹사이트에 신청서를 등록한 후 허가를 받아야만 산업용 수은의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허가 없이 수출입을 할 경우 산업화학물질법 2019**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 Industrial Chemical Act 2019

여기에서 수은은 수은 그 자체(CAS No 7439-97-6)와 수은 합금을 포함한 수은 혼합물로, 수은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australia-restricts-the-import-and-export-of-mercury-for-industrial-use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new-rules-mercury-imports-and-exports-7-march-2022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glossary/aicis-business-servic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일본, 안전보건자료 및 라벨링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234종의 물질 고시

2022년 2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2025년 4월 1일부터 자국의 「산업안전보건법(ISHA**)」에 따른 필수 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링(경고표지)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234종의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Safety Data Sheet
**** Order No. 51

MHLW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명령초안을 공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고시에 따라 법령은 2024년 4월 1일에 발효되지만 산업계에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1년 적용하여 2025년 4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본 고시가 적용된 물질 목록, CAS 번호, 적용 최소 농도(Cut-off limit)는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JNiosh*)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본 웹사이트에서는 MHLW이 2022년과 2023년에 SDS 및 라벨링 적용을 고려할 후보 물질 목록도 검색 가능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Japan

또한, MHLW는 해당 목록에서 다음 4종의 물질을 제외하고, 2종의 물질을 1종의 물질로 통합했습니다.

○ paraquat - 제초제에 사용됨
○ 1,1'-dimethyl-4,4'-bipyridinium di(methanesulfonic acid) salt- 용매로 사용됨
○ 2,3,7,8-tetrachlorodibenzo[b,e][1,4]-dioxin- 과학 연구에 사용됨
○ tolyl phosphate- 락카, 광택용제용 윤활제의 가소제로 사용됨
○ hydrazine and hydrazine monohydrate- 항공 산업 및 의약품에 사용됨(단일 물질로 통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niosh.johas.go.jp/groups/ghs/arikataken_report.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유럽위원회, 환경발자국 데이터를 REACH하에 의무로 보고하도록 제안

2022년 3월 10일, 유럽위원회(EC*)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설계(SSbD**)등 그린 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EU REA CH****에 화학물질의 환경발자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of 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 Green Deal Initiatives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온실 가스 배출, 오염 및 자원 사용과 같은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설명하는 문서*에 따르면 REACH 개정 을 통해 등록 요항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may seem the obvious option)”이라고 밝혔습니다.
* CA/18/2022 44th Meeting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CARACAL) Open session 23 - 24 March 2022 Webex

REACH에 등록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향후 물질,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강력하고 고품질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REACH 상에서는 물질 사용의 위험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 경 영향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업계의 반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현재 REAC H의 등록 옵션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녹색 공정과 같이 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서에서 논의하는 주요 정책 선택(high-level policy op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사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REACH 등록의 일부로 환경 발자국 정보에 대한 통일된 템플릿 및 지침 문서 개발
○ 환경발자국 정보를 의무적으로 요구

문서에 따르면 정책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른 정책과 화학 정책을 고려하여 REACH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는 또한 여러 가지 “하위 옵션(sub-option)”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정보는 제조 및 수입되어 시장에 출시된 경우나 혹은 다운스트림(downstream)에 사용, 재활용, 폐기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새로운 정보는 PEF*에서 명시하는 16개 영향 카테고리 전체나 일부 정보 제공

○ 새로운 정보의 요구는 정기적인 REACH 업데이트에 연계되거나 혹은 많이 사용하는 물질 부터 적용 가능

○ 새로운 정보는 선도등록자(lead registrant)가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환경발자국으로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유럽위원회는 CARACAL* 회원들에게 REACH가 환경발자국을 적용 여부, 의무적용 여부, 사용 및 폐기 단계 고려 여부, 독립기관 인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발자국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CARACAL의 다음 회의는 2022년 3월 23-2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2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41710/environmental-footprint-data-could-be-mandatory-under-reach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멕시코 식품 수입 절차 및 유의사항

- 수출 전 관련 인증 미리 획득해야 현지 통관 및 수입 용이
- 농축수산물과 식품 수입은 수입 절차가 엄격하므로 전문 관세사를 통해 사전 문의 권장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 및 성분에 따라 멕시코 보건부의 멕시코 표준규격인 NOM 051(라벨링 규정) 및 사전수입 승인(Permiso), 멕시코 농림수산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가 필요하다. 인증 없이 현지에서 정식 통관 및 수입 절차가 어려우니 사전에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정식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ㅁ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

농림수산물은 유통 및 수입을 위해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를 획득해야 하며 농림수산부

식물보건국(Dirreción General de Sanidad Vegetal)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유전자 변형 과일, 채소, 종자 등의 수입도 정상적인 제품과 동일하게 해당되는 위생 및 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위생 증명서는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에서 발급하며, 현지 납세자번호(RF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ㅁ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와 사전 수입 신고제(Aviso)

멕시코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에 있어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와 사전 수입 신고제(Aviso)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는 자국 산업 보호책으로 품목을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하는 제도로, 수입업자는 사전에 멕시코 보건부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사전 수입 신고제(Aviso)는 멕시코 보건부와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판매 증명서, 성분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거친다. 화물 입국 시 서류 심사만 실시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통관된다.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 후 바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20~30일 이내에 보건부 직원이 불시 파견되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입 품목별 최소 1개의 샘플을 남겨두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구비 서류
사전 수입 승인제 (Permiso)	자국 산업 보호책으로 품목을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하는 제도로, 수입업자는 사전에 보건부 승인을 획득해야 함	- 판매증명서 (Cerificado de Venta libre) - 성분증명서(Cerrificado de Analisis) - Invoice - 라벨링 샘플
사전 수입 신고제 (Aviso)	멕시코 보건부와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통관 시 서류 심사만 시행함	- 판매증명서 (Cerificado de Venta libre) - 성분증명서(Cerrificado de Analisis)

ㅁ 가공식품 - 멕시코 표준 규격 NOM(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인들의 건강한 식습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20년 식품 라벨링 규정 NOM-051을 수정 및 시행했다. 몸에 좋지 않은 일부 특정 영양소가 기준을 초과할 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설탕 감미료 및 카페인의 어린이 소비를 줄이며, 식품 광고에 어린이 관련 캐릭터나 만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NOM-051 포장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일반 라벨 사양 - 상업 및 건강 정보 라벨링*이 필수이며,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연방관보: https://www.dof.gob.mx/normasOficiales/4010/seeco11_C/seeco11_C.htm



[자료: 멕시코 대외무역정보서비스]

ㅁ 멕시코 식품 수입 절차 및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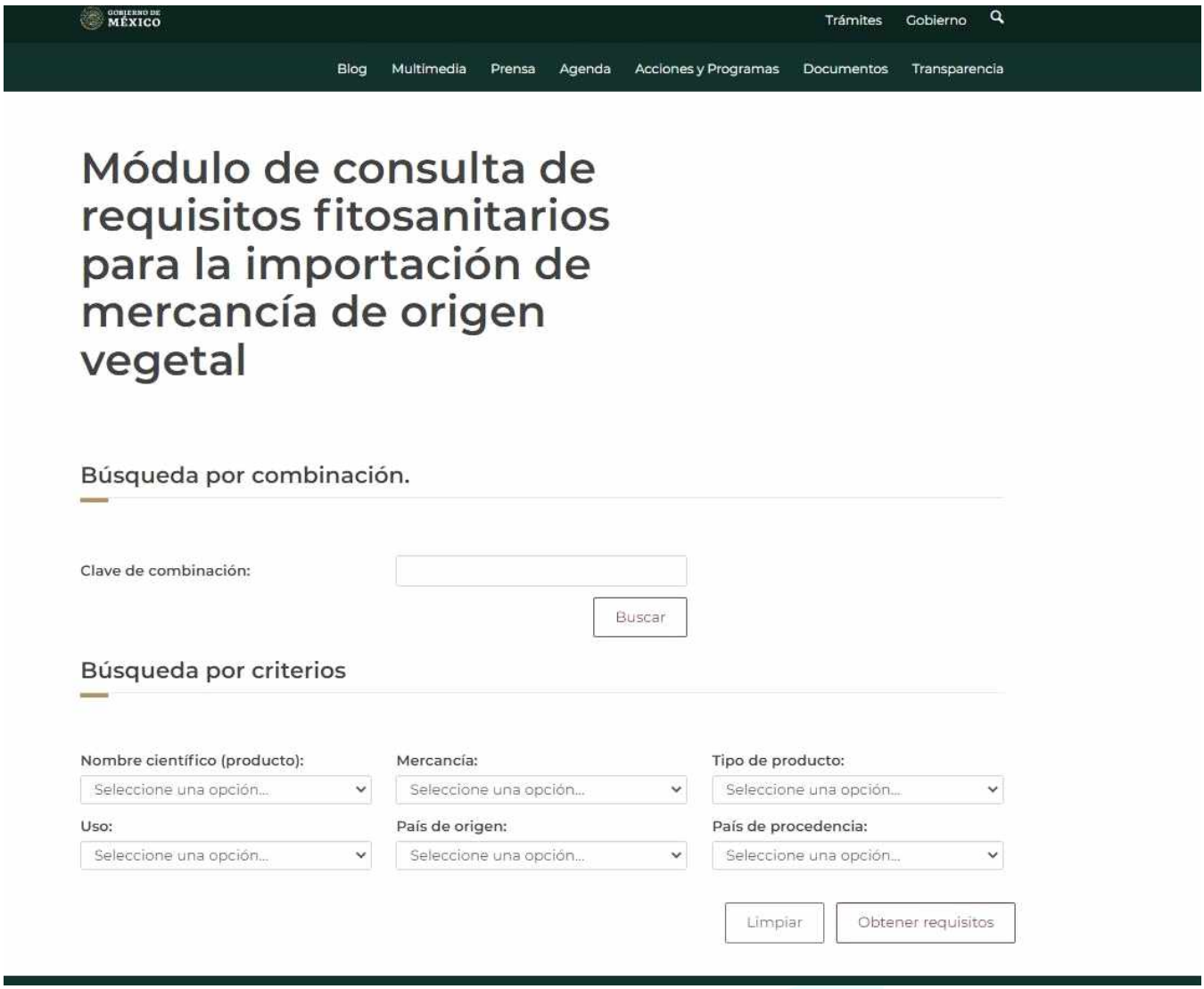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수입기업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 송장(Factura comercial), 운송서류** 및 기타 제증명서*** *수입신고서에는 물품 가액과 인보이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보이스의 경우, 발생 장소 및 날짜,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물품에 대한 상세 기술, 품목의 개별 가격 및 총액이 기재되야 함 **운송서류는 항송운송장, 선하증권(B/L) 등으로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비관세 규정 및 규제준수 관련 서류로, 위생증명서, 사전 수입 승인제(Permiso)와 사전 수입 신고제(Aviso), 각종 증명서, 인증서, 허가증 등이 해당됨
2.관세 납부	세번(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 및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세번 확인이 매우 중요함. 관세부가기준가액은 CIF 가격으로 인보이스 상 기재한 가격임
3.식품검사여부 판정	화물검사는 통관대에 부착된 판정 신호등을 통해, 통관 시 관세사 또는 화주가 버튼을 눌러 적색불일 경우 화물 검사 실시, 녹색불일 경우 검사 면제되는 무작위 선별 방식 시행
4.식품 검사 및 검역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멕시코 첫 관문지역에 파견된 농림수산부(SADER) 검역관이 진행하며 소요 시일은 통상 20일 정도임
5.식품 검사증명서 발급	농림수산부 검사관은 식품 검사 및 검역 결과 수입에 문제가 없는 식품의 경우 식품검사증명서를 교부하며, 이에 따라 세관 통관이 가능함
6.검사 결과의 조치	수입 식품의 시료 검사 후, 유해 미생물 또는 유해 물질 검출 시, 해당 식품은 멕시코 영내 반입이 불가하며, 수입자(또는 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반출 또는 폐기하고 비용은 수입자(또는 책임자)가 모두 부담함

ㅁ 멕시코 온라인 검역 현황

멕시코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 검역 모듈 사이트(https://sistemasssl.senasica.gob.mx/mcrfi)를 통해 농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검역 조건 및 수입 통관(인증 및 관련 서류), 검역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정보 검색은 검역고유번호(Clave de combinación) 또는 상품 품종(학문명), 원산지 국명 등 포탈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 시, 통관 및 검역 요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멕시코 농수산식품부 검역 모듈>



[자료: 멕시코 농수산식품부]

ㅁ 시사점

멕시코 수출 시 식품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라벨링이다. 성분 표기, 원산지 국명,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 번호, 유효 기간 등에 대한 정보 표시는 물론이고, 영양 정보, 적합한 소비시기, 섭취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일례로 2021년 10월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33개의 인스턴트면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하였다. 우리나라 A사의 경우, 특정 육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방소비자보호청에서는 해당 육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NOM-051 규정을 위반하는 애니메이션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B사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는 특정 야채의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야채가 포함되지 않은 점, C사는 나트륨 함유량 등 영양 정보가 라벨링에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라벨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각 세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소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산물이나 식품 수입의 경우 수입 절차가 다른 품목보다 까다로워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멕시코에는 총 49개의 세관이 있다. 이 중 19개 세관은 북부접경 지역에, 2개 세관은 남부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항만 지역에 17개의 세관이, 내륙 지역에 11개의 세관이 운영 중이다.또한 라벨 부착 또는 사전 승인 문제 등으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 창고료가 높기 때문에 창고료 절감을 위해 공식통관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세 창고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동 창고의 경우, 창고료도 저렴할 뿐 아니라 통관 비용이 부족하여 전량 통관이 힘든 경우 부분 통관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멕시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다. 위생증명서의 경우, 현지 납세자번호(RFC)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멕시코 환경자연부(SEMARNAT) 공고 상으로는 9일 정도가 소요되나, 통상적으로 가공식품의 경우는 1달, 농수산식품의 경우 그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상기 규제나 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출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 자료]

멕시코 식품 및 음료 라벨링 정보

자료: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보건부(SSA),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관세청(SAT),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 멕시코 환경자연부(SEMARNAT), 멕시코 연방관보(DOF),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 KOTRA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2022년 중국 수입식품 관련 新 정책 시행

- 중국 소비자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입식품 시장도 안정적 성장
- 시장 다변화에 따라 中 정부는 수입식품 관련 법규 새롭게 정비

배경

작년 3월 중국 해관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하'신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중국의 수입식품 시장은 중국 물류 및 인터넷 산업 발전으로 소비 방식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계속했다. 중국은 WTO 가입 후에 수입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특히 2019년에는 뉴질랜드, 페루, 한국, 호주 등 8개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 간 협정세율을 더 낮추었는데 거의 모든 수입식품이 이에 포함되었다. 수입식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도 수입식품을 보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2014~2019년 중국 수입식품 시장 규모>
(단위: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총서]

주요 내용

중국의 수입식품 시장은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며 2019년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908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즉 수입액은 2018년보다 172억 4000만 달러 더 늘어났다. 이번 관련 정책은 수입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이 기존의 관련 법규를 개정,시행한 것이다.올해1월1일부터 발효된'신 규정'은 크게6개 항목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2022年3月15日 星期二

海关电邮 · 下载中心 · 用户空间 · 无障碍 · 繁體版 · English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 R.CHINA

请输入搜索关键字

热词: 减免税 海关管理 货运监管 行政监管

首页 | 总署概况 | 新闻发布 | 政务公开 | 互联网+海关 | 互动交流 | 专题专栏

您的位置: 首页 > 政务公开 > 海关法规

【法规类型】 海关规章
【文　　号】 署令〔2020〕248号
【发布日期】 2021-04-12
【效力】 有效
【效力说明】
【内容类别】 综合类
【发文机关】 海关总署
【生效日期】 2022-01-01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第248号令）

署令〔2020〕248号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2021年3月12日海关总署令第248号公布，自2022年1月1日起实施）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生产、加工、贮存企业（以下统称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适用本规定。

前款规定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包括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生产、加工、贮存企业。

第三条 海关总署统一负责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工作。

第四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获得海关总署注册。

[자료 : 중국해관총서]

첫째, 역외생산기업이 등록해야 하는 식품 유형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후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생산기업, 가공기업, 보관기업에 대해 역외생산기업 등록을 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육류, 유제품, 수산품, 꿀, 제비집 관련 식품 등 일부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했다.

둘째, 등록 방식을 변경했다. '신 규정'에 따르면 역외 기업 등록은 식품 분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1) 역외생산기업 소재국(또는 지역)의 식품 담당기관 '추천등록', 2) 기업의 '자체등록'이 그것이다. 기존에는 역외생산기업 소재국(또는 지역)의 식품 담당기관 추천등록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에 따랐다.

<식품 유형에 따른 등록 방식>(#)

등록 방식	식품 유형
주관기관 추천 등록	1) 육류 및 육류 제품, 2) (순대를 만드는) 창자 외피, 3) 수산품, 4) 유제품, 5)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6) 꿀 제품, 7) 알 및 알로 만든 제품, 8) 식용유지 및 오일, 9) 소가 있는 면 제품(包馅面食), 10)식용 곡물, 11)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谷物制粉工业产品和麦芽), 12) 밀폐용기 건조 야채 상품 및 말린 콩류, 13) 조미료, 14) 견과류 및 씨앗류, 15) 말린 과일, 16) 볶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원두, 17) 선식 식품(膳食食品), 18) 건강 식품
기업 등록	상기 18개 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식품

주: 중국해관은 상황에 따라 상기 등록 방식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셋째, 새로운 등록 심사 방식을 실시했다. 개정 전에는 해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지정 기관이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심사 방식을 1) 서류 검사, 2) 영상 검사, 3) 현장 검사(실사)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넷째, 등록번호 관리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되었다.'신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겉포장 및 속포장 면에 모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주관 당국의 승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2022년1월1일 이후 생산한 모든 대중국 수출용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그 이전 생산된 제품은 겉포장에만 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변경 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다섯째, 역외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섯째, 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 규정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 규정'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미 등록을 완료한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에 한해 등록 갱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3~6개월 내에 '신 규정' 제12조의 관련 항목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등록 자격은 말소 처리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



[자료 : 중국해관총서]

한편 중국 수출입 식품 무역의 고속 성장 및 식품 공급망 글로벌화로 일부 가공식품 등 비전통식품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출입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신 방법')은 2015년도와 2019년도에 대폭 수정된 이래 2021년 4월 21일 또 한 번의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신 방법'은 기존 64조에서 79조로 늘어났는데,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기존 17조에서 29조로 항목이 증가하였는데, 해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수입식품의 합격 판정, 지정항구 및 지정관리장소, 항구 현장검사, 중문 라벨 관리, 불합격 처리, 리스크 관리 등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30조 조례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 등이 누락된 식품은 수출을 할 수 없다. 또한 수입 건강보건식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 전 최소 포장 용기에 중문 라벨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후 임의로 스티커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기존 분유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영양 보충식,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우리 식품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시사점

수입식품에 대한 새로운 두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위와

같은 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에 주목하여 특수 상황에 따라 제때 조정해야 하며 중국관련 법률,법규와 식품 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료 : 중국해관총서,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KOTRA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